

1. 개정이유

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,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·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(예정)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,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·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산후조리업 폐업·휴업 등 신고기한, 폐업·휴업 시 이용(예정)자 고지 의무와 고지기한 신설(안 제18조의3 전단)
- 나. 폐업·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정(안 제18조의3 후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의견 조회 예정(2026. 6월)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6. ~ 7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 전단 중 “신고를 하려는 자는”을 “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·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”를 “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,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·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의 폐업·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